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28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4年 12月 21日(水) 17時34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4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4. 1995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5. 平昌郡顧問辯護士條例중改正條例案
6. 平昌郡一般廢棄物의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7. 平昌郡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8. 平昌郡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9. 1994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 1995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 休會의件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 3 面
2.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 3 面

3.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 3 面
4. 1994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平昌郡守提出) ——— 5 面
5. 1995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平昌郡守提出) ——— 5 面
6. 平昌郡顧問辯護士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 7 面
7. 平昌郡一般廢棄物의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平昌郡守提出) ——— 8 面
8. 平昌郡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平昌郡守提出) ——— 8 面
9. 平昌郡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平昌郡守提出) ——— 12 面
10. 1994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平昌郡守提出) 13 面
11. 1995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平昌郡守提出) ——— 14 面
12. 休會의件(議長提議) ——— 18 面

(17時34分 開議)

○ 議長 韓榮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단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기회운영에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93년도결산및 '9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중요안건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진지한 논의로 계획된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심의될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7時 35分)

○ 議長 韓榮一 :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事務課長 權赫昇 : 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 議長 韓榮一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3.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17時36分)

○ 議長 韓榮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낙운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먼저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1994년 9월 3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994년 11월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 12월 6일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해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소수의견, 기타 필여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

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특위에 회부되어 1994년 12월 6일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걸쳐 의결한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김낙운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1994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平昌郡守提出)
5. 1995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平昌郡守提出)

(17時 40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李永德 : 재무과장 이영덕입니다.

1994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12월 17일 평창군의회에서 동의 의결된 1994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변경계획의 동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 군유림 확대및 경영효율을 기하고자 군유림 인접 사유림 4필지 97.389㎡를 추가 취득코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회계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친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84조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입안된 취득, 처분재산은 총 211건에 4,724,856㎡로서 취득재산은 군청사 확장부지 4필지 2,956㎡, 보건지소및 진료소부지 3개소 6필지 1,460㎡, 건물 신규취득 4건 8,363㎡등 모두 11건 10필지 4동 12,779㎡이며, 처분재산은 사유건물 점유부지 11필지 1,354㎡와 봉평 도옵가 가꾸기 이주 주택부지, 송정택지 미분양 부지, 횡계수해주택 이전부지, 농촌지도소 북부지소부지등 각종사업 추진용, 매각재산5건 36,155㎡이며, 구용전출장소,도암문화관등 불용 건물철거 2건 473㎡입니다. 교환은 군유림 집단화를 위하여 국유림과 교환코자하는 것으로 처분 53필 2,32 6,880㎡와 취득 126필 2,347,205㎡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199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99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의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平昌郡顧問辯護士條例중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7時 46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高昶植 : 기획실장입니다.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행위가 늘어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시기에 관내 법률전문가가 없는 관계로 각종 질의나, 법령해석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이 1981년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하고자 하는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 이상 10만원이하에서 매월 15만원이하로 상한선을 조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기획실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平昌郡一般廢棄物의排出方法및手數料등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平昌郡守提出)

8. 平昌郡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7時49分)

○ 議長 韓榮一 :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 환경보호과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95년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 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및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적용대상은 가정쓰레기 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소규모사업장의 일반쓰레기이며,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의무적으로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본조례의 별도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예를 들면, 깨진유리, 스치로폴, 이사등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쌀마대, 시멘트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쓰레기 봉투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에 관한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과 구분하여 일반용봉투는 10ℓ,20ℓ, 50ℓ 100ℓ 공공용봉투는 50,100ℓ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쓰레기봉투 제작, 공급및 판매 소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제8조, 제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봉투판매소는 군수가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며, 봉투판매업자로 부적당할 경우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봉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업소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판매에 따른 일정비율은 9%의 이익을 판매소에 주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봉투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각자의 쓰레기배출량을 기준으로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섯번째, 저소득층의 수수료경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그내용은, 감면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하며, 감면방법은 매월 60ℓ를 기준으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불결한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화장실은 건축물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2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투를 군에서 제작하여 특정한 판매업소를 지정하여 판매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은 불법 유통을 어떻게 막을것이냐, 일반인들이 유사하게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처리할 것이냐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할때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한군데 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제작하여 제작한 원판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즉시 납품을 받을때 회수를 하여 원판을 관리하고 , 우리의 봉투에는 색도라든지, 고유마크를 도용을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제작할때 조치는 취해 놓았습니다만은 혹시 유사품이 나오는것은 수시로 판매소를 점검을 하여 유사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방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하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유료화하여 관리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은 몇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 58개소가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지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 58개소중에는 국립공원내에 10개소, 종합운동장에 2개소, 고속도로휴게소에 8개소,저희군에서 관리하는곳 1개소, 버스터미널5개소 주유소 32개소가 있는데, 지금현재

까지 종합운동장은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장평에 있는 1개소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업소에 업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잘알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平昌郡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8時00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申大松 : 지역경제과장 신대송입니다.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심삭한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1995년도부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및 운

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노상주차장및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자로 부터 받는 주차요금과, 주차장을 위탁할경우 위탁자로부터 받는 부담금 , 도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 관리자 위반시 받는 과징금 무신고, 노외주차장 관리장에 부과하는 과태료및 도로법 제43조관련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 강원도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관련 과징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금등이며,

세출분야로는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및 노외 주차장설치관리및 운영비,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및 운영비 보조,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및 융자,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

<참조>

.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1994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

會計追加更正豫算案(平昌郡守提出)

11. 1995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平昌郡守提出)

(18時04分)

○ 議長 韓榮一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이신 주태원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朱泰元 議員 : 주태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 예결특위를 열어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오후2시로 계획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였으나, 계수조정및 동의절차가 지연되어 부득이 본회의 시간을 17시로 연장요청하여 늦게 개의토록 하게 된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7인으로 구성하여 12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7차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금일 오전에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99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8,1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4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수정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안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5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616억5,342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59억1,293만원 특별회계가 57억4,04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특위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의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입및 기타부문에 대하여는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중에서 의회비에서 의원해외연수비 2,800만원, 기획관리비에서 심층광천수개발 관련사업비 1억3,886만4천원,공보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2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행정통신센타 통신장비 구입비 1,92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민원실 민원대설치 2,200만원 재무행정비에서 소형화물차구입비 2,200만원, 농수산비에서 유리온실 설치및감

리 부대비 1억2,424만6천원, 임업비에서 임도호우피해복구비 7천만원, 건설사업비에서 군도노후교량 보수비 2,000만원 군도보수및 정비 1,000만원,농어촌도로 노후교량보수사업비 5,150만원등 총 6억1,781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에서 지역개발비중 봉평소도읍정비에 3억원등과, 지원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3억1,781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고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세출에서 각각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특위에서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199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199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99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 199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주태원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바 있는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안계십니까?

본의회 특성상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특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韓琦洙 : 한기수부군수입니다 사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6억원 삭감한 3억원은 봉평도읍정비로 충당하기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 議長 韓榮一 :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및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한기수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副郡守 韓琦洙 : 한기수 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오늘까지 제2차 본회의를 마치는 동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및 예비비 결산심사등의 주요 의안을 처리하여 주셨으며, 특히 '95당초 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심의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군이 계획하고 추진 집행한 군정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안중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조치하고, 제도나, 관행등 개선을 요하는 사안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군정의 모든업무가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평창군이 추구해야할 목표와 시책에 대하여는 군산하 600여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자기개발을 통한 의식의 대변환으로 우리 모두가 달라진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무한히 창출될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한계점과 본군의 재정여경을 감안 절약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일과 품으신 대망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韓榮一 :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통과에 즈음하여 송정택지 10억원에 대한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손실이 생기지 않고,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잘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세출면에 있어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여 위민복지행정을 구현하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12. 休會의件 (議長提議)

(18時20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합의된대로 의원님들의 지역단위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29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1分 散會)

○ 出席議員

議 長	韓 榮 一
副議長	金 鍾 永
議 員	李 致 玉
議 員	李 相 薰
議 員	朴 容 泰
議 員	朱 泰 元
議 員	金 樂 雲
議 員	郭 文 春

○ 出席公務員

副 郡 守	韓 琦 洙
企 劃 室 長	高 昶 植
文化公報室長	表 福 均
內 務 課 長	金 榮 柱
社會振興課長	權 純 喆
財 務 課 長	李 永 德
社 會 課 長	姜 慶 錫
地域經濟課長	申 大 松
環境保護課長	金 學 根
都 市 課 長	金 敏 洙
建 設 課 長	洪 基 杓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權 赫 昇
議 事 係 長	咸 京 鎬

【 議 席 】

○ 議席表 (23 面에 실음)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 捺印함.

1994年 12月 日

議 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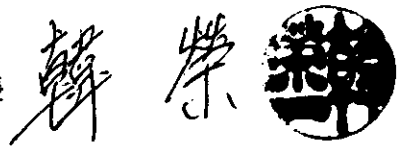

議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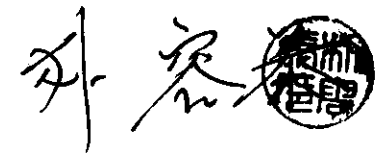

議 員

事務課長

【 報 告 事 項 】

○ 議案接受

o 平昌郡守提出

.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1994年 12月 2日)

. 1995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1994年 12月 8日)

. 1994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1994年 12月 8日)

. 平昌郡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중改正條例案 (1994年 12月 13日)

. 1994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994年 12月 15日)

. 1995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修正豫算案 (1994年 12月 15日)

. 平昌郡稅減免條例案 (1994年 12月 5日)

o 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審査報告書

.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

. 1994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 1995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

(以上4件 1994年 12月 21日 豫決委員長 提出)

○ 豫算決算特別委員會運營事項

. 豫算決算特別委員會로부터 委員長및 幹事選任通報

- 委員長 朱 泰 元

- 幹 事 金 樂 雲

. 1995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增額同意要求

(1994年 12月 21日 平昌郡에移送)

(1994年 12月 21日 平昌郡守로부터同意通知)